

의안번호	제 97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 
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#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임영은, 박상돈,  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  
김국기, 원갑희

## 1. 개정이유

-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(안 제3조)
  - 제5조제1항제1호 삭제(「건축법」 제81조의2제1호에 해당하며 제81조의3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) → 상위법령 삭제
  -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→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안제5조제1항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 - 아니하거나 → 았거나(안 제2조)
  - 아니하는 → 았는(안 제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”을 “않거나 사용하지 않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(중전의 제3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“주변환경피해 파손 건축물(이하 “주변피해건축물”이라 한다) “이란 충청북도 또는 시·군에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<u>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</u> 주택이나 건축물이면서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파손된 건축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지원대상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및 보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건축법」 제81조의2제1호에 <u>해당하며 제81조의3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에</p>	<p>제2조(정의) “주변환경피해 파손 건축물(이하 “주변피해건축물”이라 한다) “이란 충청북도 또는 시·군에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<u>않거나 사용하지 않는</u> 주택이나 건축물이면서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파손된 건축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대상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및 보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1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2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에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따라 철거하는 경우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따라 철거하는 경우</u></p> <p>3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제11조(빈집의 철거) ① 시장·군수 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(이하 "지방건축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붕괴·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
2.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

② 시장·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 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,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 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.

⑤ 시장·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.

1.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
  2.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(所在不明)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
  3.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
- ⑥ 시장·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,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,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